

폴란드, 노동이동 현상에 따라 노동시장 개방

1. 폴란드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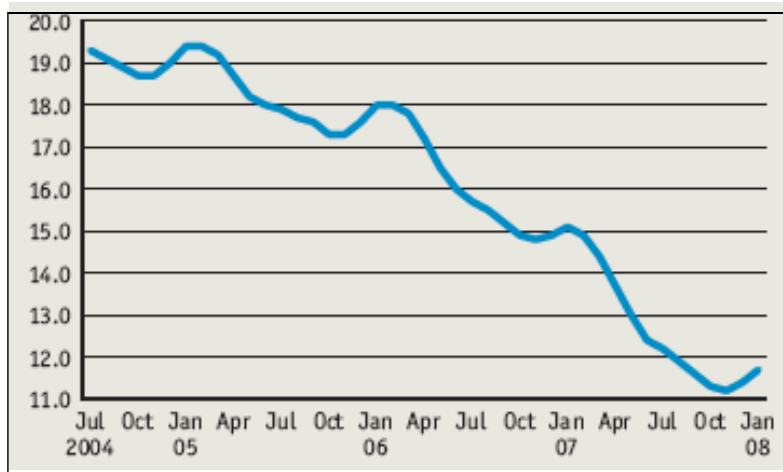
□ 노동력 부족 심화, 실업률 하락 추세

- 2000년대 초 폴란드 노동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고용인력 긴축전략에 따라 실업률이 20%까지 근접하는 등 치솟는 실업률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지적받았음.
- 그러나 2004년 5월 EU 가입을 전후하여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노동 수요가 증대되었고, 결국 노동력 공급 속도가 일자리 창출 여력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더욱이 영국, 아일랜드 등이 노동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서유럽 국가로 근로자 이민이 급증하면서 숙련공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그림>

최근 폴란드의 실업률 추이
(2004. 7~2008.1)

단위: %



자료: EIU

- 폴란드의 실업률은 EU에 가입한 2004년 19.6%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실업률은 2007년 말 11.4%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서유럽으로 이주한 노동자 및 미등록 사업체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10% 이하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실업노동자의 대부분이 미개발 낙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처인 대도시 인근에서는 가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임금 경쟁력 하락

- 2008년 3월 유럽연합 통계정보서비스(Eurostat)의 EU 27개국 2007년 3·4분기 시간당 임금 상승률 발표에 따르면, 폴란드는 3·4분기분기 평균 11.5%를 기록하여 Visegrad-4국가¹⁾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최근 임금상승은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또한 숙련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서유럽으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임금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현재의 임금상승률이 지속된다면 폴란드의 외자유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폴란드는 임금수준 관리, 노동시장 개방 등의 노동정책 부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표 1> 2007년 분기별 시간당 임금상승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국 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슬로바키아	6.3	8.0	7.8	8.1
체코	7.9	8.4	8.9	6.7
폴란드	10.4	11.4	11.9	11.1
헝가리	10.3	11.9	9.1	7.6
EU 27개국	3.7	3.5	3.7	3.5
유로존 13개국	2.2	2.6	2.5	2.7

자료: Eurostat.

1)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포함하며, Visegrad는 1991년 동유럽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개최된 헝가리의 도시 이름임.

<표 2> 폴란드내 산업부문별 시간당 임금상승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부 문	'06. 4분기	'07. 1분기	'07. 2분기	'07. 3분기	'07. 4분기
제 조 업	8.4	11.1	10.5	11.3	11.1
건 설 업	18.5	12.4	15.3	20.4	16.9
서 비 스 업	2.2	9.2	11.7	11.1	9.9
폴란드 전체	6.3	10.4	11.4	11.9	11.1

자료: Eurostat.

2. 인근 3개국에 대한 노동시장 일부 개방

가. 폴란드계 이민자에 대한 노동촉진법 도입

□ 폴란드계 이민자 대상 준내국인 편의 제공

- 폴란드 정부는 동유럽 인근 3국(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거주 폴란드계 이민자를 폴란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들의 폴란드 체류 및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동 법에 따라 폴란드계 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기초 이상의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폴란드 문화 및 관습을 따르고 있는 폴란드계 이민자들은 폴란드 내국인에 준하는 입국, 노동, 체류 편의를 제공받게 됨.

<동유럽 인근 3국 거주 폴란드계 이민자에 대한 주요 혜택 내용>

- 폴란드계 이민자에 대한 거주인가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후 연장 가능
- 거주인가증 보유기간 중 노동허가 없이 폴란드 내 취업 가능
- 장기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및 복수비자 발급 가능
- 폴란드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 및 운영가능
- 교육, 의료,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폴란드인에 준하는 혜택 부여

□ 한시적 운용 후 유효성 분석으로 연장 검토

- “폴란드인 거주인가증” 제정법(Act Establishing the Charter of the Poles)이 2007년 9월 7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8년 3월 29일 발효 예정임.
- 동 법은 한시법으로 2009년말 소멸하며, 소멸시점에 동 법의 효과를 분석하여 유효성이 입증되면 연장 가능함.

나. 2008년 2월 노동허가 면제법 발효

□ 노동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 노동행위 근절(도입취지)

- 2012년 유로컵 축구대회 유치 확정 이후 건설노동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유럽 인근 3국 노동자들의 불법노동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합법적 노동시장으로 유입시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노동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
- 동 법안은 2007년 초 법과정의당 전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2008년 1월 29일 현 노동부 장관에 의해 한층 강화된 규정이 도입되어 2월 1일 발효됨.

□ 1년중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폴란드 내 취업 가능

- 동 법에 따라 동유럽 인근 3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폴란드 입국 후 1년 기간 중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해짐.
- 이는 2007년 초 도입된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당초에는 노동허가 없이 취업 가능한 기간이 폴란드 입국 후 6개월 기간 중 3개월이었음. 따라서 3개월 취업 후 본국으로 귀환하여 3개월을 체재하고 다시 입국해야하는 불편함과 수속 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있어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이 동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였음.
- 동 제도 이용 희망 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청에 인근 3국 노동자 고용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의향서 제출은 One-stop Service로 가능하며 무료이고, 고용의향서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됨(노동허가는 면제되나 비자는 필요).

해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원 구윤정
 (☎3779-6665) kooyj@koreaexim.go.kr